## 「'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」시행 공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른 '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| 1 | l | 햇 | 모             | 전      |
|---|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|   |   | $\overline{}$ | $\neg$ |

□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

## 2. 지원 대상

- □ <sup>①</sup>′21.7.7.~′21.9.30. 동안 <sup>②</sup>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<sup>④</sup>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
  - ① (기간) '21년 7월 7일부터 '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
    - \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소상공인법」) 개정·공포일('21.7.7.)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
  - ② (방역조치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감염병예방법」)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
    - ※ 그 외의 방역조치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(예시) ▲면적당 인원 제한, ▲수용인원 제한, ▲시설 일부 사용 제한, ▲사적 모임 제한, ▲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

- ③ (손실) 영업이익 감소 (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)
- ④ (규모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<u>소기업</u> 요건 충족 【붙임1】

< 대상 시설 예시 >

| <br>방역조치   |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       |   |     |  |  |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|--|--|
| 경역포시       | 2단계                | 3단계   | 4단계 |  |  |  |
| 집합<br>금지   |                    | ■유흥·단란주점 ■클럽·나이트<br>■감성주점 ■헌팅포차<br>■콜라텍·무도장<br>■홀덤펍·홀덤게임장<br>※ 사회적 거리두기 2~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|  |
| 영업시간<br>제한 | ■ 식당·카페<br>■ 노래연습장 | ■ 식당·카페 ■ 노래연습장 ■ 직접판매홍보관 ■ 목욕 <sup>2</sup> ■ 식당·카페 ■ 수영장 ■ 실내체육시설 ■ 노래연습장 ■ 학원 ■ 영화관·공연장 ■ 직접판매홍보과 ■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■ 녹 |     |  |  |  |

※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

## 3. 지급 기준

□ (산정방식)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
❖ 손실보상금 = 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 이행일수 × 보정률

### <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>

#### 

- \*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
- \*\*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'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% 반영

## 1. 일평균 손실액

- □ 기본 원칙 : 일평균 매출감소액('19년 대비 '21년)에 영업이익률('19년)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('19년)을 반영
  - (일평균 매출감소액)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(이하 인프라매출액)<sup>\*</sup> 감소분('19년 대비 '21년)을 해당 월의 일(日)수로 나눈 값
    - \* ▲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▲신용카드 결제금액, ▲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, ▲전자지급 거래액, ▲전자계산서 발급액
  - ※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**현금매출을 반영**하기 위해 **부가가치세** 신고매출액(이하 부가세매출액)도 활용
  - **(영업이익률) 매출액('19년)** 중 **영업이익('19년)**의 비중
  - (인건비·임차료 비중) 매출액(19년) 중 인건비와 임차료(19년)의 비중
     \*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·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% 반영

## □ 세부 산정방식

- ① (일평균 매출감소액)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'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, '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
  -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
  - 최근에 개업하여 '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,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'20년 또는 '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'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
  - 인프라매출액에서 **누락**되는 **현금매출을 반영**하기 위해 **부가세 매출액**을 활용하여 **보정**
- ❖ 일평균 매출감소액 : ('19년 월 매출액 '21년 월 매출액) ×
   ★ '19년부가세매출액 : 해당 월의 일 수 '19년인프라매출액 : 해당 월의 일 수

### < 예외적인 경우 >

◇ '19년 7~9월 중 개업하여 '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

(예시 : '19.7.22. 개업 시 '19.7월 매출 발생 일수는 최대 10일에 불과)

- ☞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'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
- □ 해당 시설의 '20년 대비 '19년 동월 평균 인프라매출액을 활용 하여 '19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을 추정
  - \* (예시) '19.7월 매출액 = '20.7월 인프라매출액 ×  $\frac{'19.7.$ 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 '20.7.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
- ◇ '19년 1월 ~ '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
- ◇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'19년~'21년의 7~9월 인프라매출액만 없는 경우(예시 : 사업장 공사, 계절적 요인,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)
  - □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(단, 부가세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)
    - \* (예시) '18년 이전 개업자 :  $\frac{'19.부가세매출액}{365}$  × 시설평균매출감소율('19년 대비 '21년)

'19년~'20년 개업자 :  $\frac{'20.부가세매출액}{9업한일수} \times \frac{'19.시설평균부가세매출액}{'20.시설평균부가세매출액}$ 

× 시설평균매출감소율('19년 대비 '21년)

- ◇ 보상 대상인 달('21년 7~9월)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 (예시 : '21.7월 개업자의 '21.7월 보상금 산정)
  - ☞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 활용
- ◇ '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, '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'20년~'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

(예시 : '21.7월 인프라매출액× '19.7.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 ='21.7월 인프라매출액)

☞ '21년 **4~6월 평균인프라매출액**으로 '19년 7~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

- ② (영업이익률, 인건비·임차료 비중)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("21년 개업, 단순 경비율 대상자 등)는 업종·시설별 평균값\* 적용
  - \* 평균값 산출 자료 : **(영업이익률)** '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 **(인건비·임차료 비중)** '19년 서비스업 조사(통계청)
  -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,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

| 기장(記帳) 유형 | 영업이익 산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복식부기 의무자  | (영업이익)=(매출액)-{(매출원가)+(판매비와관리비)} |  |  |
| 간편장부 대상자  | (영업이익)=(총수입금액)-(필요경비)           |  |  |
| 기준경비율 대상자 | (영업이익)=(총수입금액)-{(주요경비)+(기준경비)}  |  |  |
| 단순경비율 대상자 | (영업이익)=(총수입금액)-(단순경비)           |  |  |

-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·시설별 평균값 적용

| 개업 시점               | 적용 자료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~′18.12.31.         |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   |
| ′19.1.1.~′20.12.31. |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   |
| ′21.1.1.~′21.9.30.  |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(통계청)<br>※ 개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9월까지의 자료로 대체 가능 |

## 2. 방역조치 이행일수

- □ 사업장별로 **'21.7.7.~'21.9.30. 동안 집합금지** 또는 **영업시간 제한** 조치를 실제로 **이행**한 일(日)수
  - (일반사업자)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·군·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
  - (폐업자)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,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
  - (방역조치 위반자)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(日)수 및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제3항\*에 따른 운영중단·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
    - \* 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,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

## 3. 보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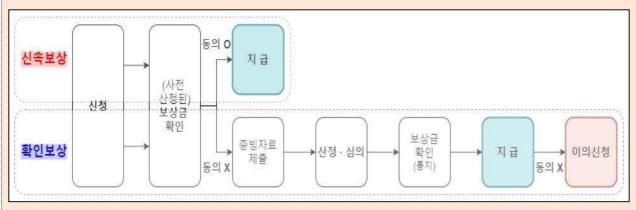
- □ 손실액의 80%
  - ※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%로 의결

## 4. 보상금액의 상·하한

- □ (상한액) 분기 1억원 / (하한액) 분기 10만원
  -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,
    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

#### 4. 신청 방법 및 절차

◈ 【신청·지급절차】  $^{①}$ 신속보상  $\rightarrow$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,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 $^{②}$ 확인보상  $\rightarrow$   $^{③}$ 지급  $\rightarrow$   $^{④}$ 이의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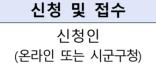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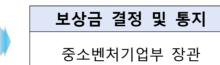
### 1. 신속보상

온라인 신청 : 10월 27일~

오프라인 신청 : 11월 3일~

< 신속보상 신청 · 지급 절차 >



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지급(2일 이내)

## □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) 손실보상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·신청
 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·법인용 공동인증서) 절차를 거쳐 신청

## <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·지급 절차>

- ① 홈페이지의 '보상금 신청' 클릭  $\rightarrow$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$\rightarrow$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$\rightarrow$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$\rightarrow$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$\rightarrow$  ⑥ 지급
- (오프라인)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(「소상공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호) 【붙임2】를 작성·제출
  -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·군·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,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
    - \*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-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
  - 온라인 : 10월 27일(수)~10월 30일(토)
  - 오프라인 : 11월 3일(수)~11월 8일(월) 【※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및 부산】

| 온라인 신청    | 10.27(수)      | 10.28(목)      | 10.29(금)      | 10.30(토)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사업자번호 끝자리 | 1, 3, 5, 7, 9 | 2, 4, 6, 8, 0 | 1, 3, 5, 7, 9 | 2, 4, 6, 8, 0 |
| 오프라인 신청   | 11.3(수)       | 11.4(목)       | 11.5(금)       | 11.8(월)       |
| 사업자번호 끝자리 | 1, 3, 5, 7, 9 | 2, 4, 6, 8, 0 | 1, 3, 5, 7, 9 | 2, 4, 6, 8, 0 |

## □ 지급 : 신청 당일~2일 이내 지급

#### <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>

- ① 홈페이지의 '보상금 신청' 클릭  $\to$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$\to$  ③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 $\to$  ④ 자가진단  $\to$  ⑤ 보상대상 확인요청(사업장 정보 입력))  $\to$  ⑥ 방역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상금 산정  $\cdot$  심의  $\to$  ⑦ 결과 통보  $\to$  ⑧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
  - ※ **관할 지자체**로부터 **방역조치 대상**으로 **확인받은** 경우 **보상 신청이** 가능하며, 방역조치 **대상 미확인 통보**를 받았더라도 지자체에 **재차 확인 요청** 가능

### 증빙서류

① 온라인 신청 :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(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)

| 예외 적용 대상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|
|--|--|
|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합위임장【붙임3】   |
|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 | 1) 가족: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<br>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|
|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<br>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|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                 |
| ❸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<br>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             |

# ② 오프라인 신청

※ 필수서류: 1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2)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

| 2) -11 -11 -12 -12 -13  | 52 1 220   |  |  |
|---|--|--|--|
| 대상 유형   | 제출서류   |  |  |
|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 | 통합위임장  |  |  |
| <ul> <li>❷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</li> <li>*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</li> <li>미보유자, 미성년자,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: 주민등록등본(초본) 2) 미성년자인 경우 : 통합위임장   |  |  |
| <ul> <li>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<br/>수령희망 사업체</li> <li>★ 입원, 해외체류 등</li> <li>★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<br/>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</li> </ul> |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 1) 가족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 2) 타인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|  |  |
| ①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<br>(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)   |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|  |  |
| <ul> <li>●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<br/>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</li> <li>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<br/>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<br/>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</li> </ul>  | 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 1) 가족: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 2) 타인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  |  |  |

#### 2. 확인보상

온라인 신청 : 10월 27일~

오프라인 신청 : 11월 10일~

지급

(2일이내)

소상공인

시장진흥공단

#### < 확인보상 신청 · 지급 절차 >

신청 및 보상금 보상금 보상금 재산정 접수 심의 결정 및 통지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손실보상 (온라인 또는 중소벤처기업청 심의위원회 장관 시군구청)

#### □ 신청 대상

- ① **신속보상**으로 산정된 **보상금액에 동의**하지 않아 **재산정**받고자 하는 사업자
-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,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
  - \*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m² 이상), 직접판매홍보관,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, 비영리법인 등

### □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) 손실보상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·신청
 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·법인용 공동인증서)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

#### <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확인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·지급 절차>

-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$\rightarrow$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$\rightarrow$  ③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$\rightarrow$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$\rightarrow$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$\rightarrow$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$\rightarrow$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$\rightarrow$  ⑧ 지급
- (오프라인)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\* [붙임4] 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·제출
  - \*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
  -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·군·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, 신청인 본인확인,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
    - \*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### □ 신청유형별 즁빙서류

- ①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
  - ※ **매출액**에 관해서는, 국세청이 보유한 **과세인프라자료** 및 **부가가치세 신고자료**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**확인보상 증빙서류 대상**에서 **제외**
  - (영업이익률, 인건비·임차료 비중) 업종·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(예시: '19년, '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, '21년 개업자 등)
    - □ ▲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(19년, '20년, '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), ▲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, ▲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(통장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)

#### 【증빙서류 인정범위】

- ▶ '18년 이전 개업자 : **'19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**
- ▶ '19년, '20년 개업자 : **'20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**
- ▶ '21년 개업자 : **예외적으로 '21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** 
  - (시설분류)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(예시 : ○○노래연습장 / 식당·카페)
    - ☞ <u>▲시설분류확인서(지자체발급)</u>
  - (방역조치 일수)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
    - ☞ ▲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\*(지자체발급)
    - \*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,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추가 제출 필요
- ②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
  - (상점·마트·백화점) ▲시설분류확인서(지자체 발급 건축물대장 필요)
  - (직접판매흥보관) ▲시설분류확인서(지자체 발급 임대차계약서·현장사진 필요)
    - ※ 지자체는 **직접판매홍보관**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**주소지 1개**당 **사업자 1인**에 대해서만 발급
  - (방역조치 위반자) ◆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(지자체발급)
  - (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) ▲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

# ※【참고】세부 유형별 제출·증빙서류

- ※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
- 1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- 2)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

| 신청·접수<br>경로 | 대상 유형  | 제출서류  |
|-------------|--|---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·임차료 비중 정정  | <ul> <li>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<br/>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<br/>('19년, '20년, '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)</li> <li>4대보험료 산출내역서</li> <li>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(통장사본,<br/>계좌이체 내역 등)</li> </ul>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❷ 시설분류 정정  | 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 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3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 |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<br>(관할 지자체 발급)  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❹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m² 이상)  | ■ 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<br>■ 건축물대장  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 | ■ 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<br>■ 임대차계약서<br>■ 현장사진 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|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<br>(관할 지자체 발급)  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<ul> <li>✔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<br/>소비자생활협동조합</li> <li>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<br/>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<br/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</li> </ul> | * 사회적기업인증서,   |
| 온라인<br>오프라인 | ❸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| 통합위임장   |
| 오프라인        | <ul><li>●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</li><li>*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</li><li>미보유자, 미성년자, 이름·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</li></ul>   | 1)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<br>: 주민등록등본(초본)<br>2) 미성년자인 경우 : 통합위임장  |

| 신청·접수<br>경로 | 대상 유형   | 제출서류   |
|-------------|---|--|
| 오프라인        | <ul> <li>●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<br/>수령희망 사업체</li> <li>★ 입원, 해외체류 등</li> <li>★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<br/>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</li> </ul> |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<br>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  |
| 오프라인        | ①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<br>(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)   |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<br>대표자변경사실증명  |
| 오프라인        | <ul> <li>●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<br/>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</li> <li>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<br/>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<br/>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</li> </ul>  | 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 1) 가족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 2) 타인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|

※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

#### □ 보상금 재산정

-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
  - 증빙자료를 통해 ▲영업이익률, ▲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, ▲방역조치 이행일자, ▲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→ 보상금 산식 대입

## □ 보상금 심의 · 결정

-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
-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

## □ 통지 :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

\*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## □ 지급 : 통지 당일~2일 이내 지급

○ **동의 여부와 관계없이** 확인보상으로 **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급**됨 (상·하한 적용)

## 3. 이의신청

####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

#### < 이의신청 절차 >

신청 및 보상금 보상금 보상금 재산정 지급 접수 심의 결정 및 통지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손실보상 소상공인 (온라인 또는 중소벤처기업청 심의위원회 장관 시장진흥공단 시군구청)

### □ 신청 대상

- ①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
- ②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
- ③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
- ④「소상공인법」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**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**를 받은 사업자

### □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) 손실보상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·신청
 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· 법인용 공동인증서)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\*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
    - \* ▲사업자등록증, ▲시설분류확인서, ▲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, ▲영업신고서, ▲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, ▲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, ▲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, ▲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
  -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

#### <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·지급 절차>

①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 $\rightarrow$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$\rightarrow$  ③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$\rightarrow$  ④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 $\rightarrow$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$\rightarrow$  ⑥ 지급

- (오프라인)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\* [붙임5] 와 이의신청 유형별 중빙서류 작성·제출(※ 환수통지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)
  - \*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
  -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·군·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, 신청인 본인확인,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
    - \*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#### □ 중빙서류

- **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**를 보완·제출
  - \* 방역조치 위반 내역 정정을 위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(지자체 발급) 추가 제출 필요

#### □ 보상금 재산정 심사

○ **증빙서류** 및 소명자료 등을 반영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보상 결과에 대한 심사 진행

## □ 심사 결과 심의 · 결정

-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
-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또는 환수 결정

## 통지

- o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
  - \*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(90일 이내) 가능하고, 연장 사유·기간 등을 통지

## □ 지급 / 환수

-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(상·하한 적용)
-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으면 환수 절차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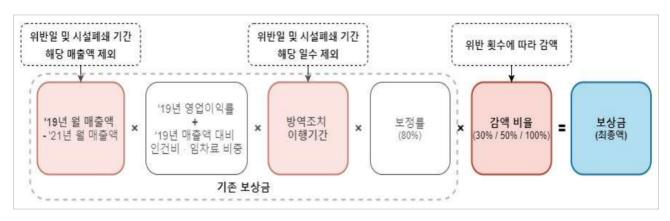
#### 4. 보상금 감액·환수

#### □ 감액·환수 대상

- (감액)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\*
  - \* 해당 위반 사실로 인하여 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, 제80조, 제83조 등에 따라 ▲과태료 부과, ▲벌금 부과, ▲운영 중단·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
- (환수) <sup>①</sup>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, <sup>②</sup>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, <sup>③</sup>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자

#### □ 감액·환수 기준

① (방역조치 위반자) '19년 월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차감하고,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



- '19년 월 매출액' 및 방역조치 이행일수\*\*에서 방역조치 위반일 및 그에 따른 시설폐쇄 기간만큼 제외하고 보상금 산정(상·하한 적용)
- \* '19년 월 매출액 x (1 위반일 + 시설폐쇄기간(일) 해당월일수(일)
- \*\* 해당월 방역조치 이행기간(일) [위반일 + 시설폐쇄 기간](일)
-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(30%/50%/100%)만큼 보상금 감액
  - <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>

|    | 구 분   |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차감일수 | 감액(안)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위반 | 1회    | 1일 + 시설폐쇄 기간     | ■ 보상금의 30% 감액  |
|    | 2호    | 2일 + 시설폐쇄 기간     | ■ 보상금의 50% 감액  |
| 횟수 | 3회 이상 | 해당 분기 전일         | ■ 보상금의 100% 감액 |

- 감액 산정된 보상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조치

- ② (허위 수급자)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
- ③ (잘못 지급된 자) 잘못 지급된 보상금액만큼 환수

## □ 감액·환수 절차

- (감액) 신속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, 확인보상 시 감액되어 지급
- (환수) 환수 사실 및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환수금액을 통지한 기한까지 납부
  - 환수금액 체납 시「공공재정환수법」및「국세징수법」등에 따라 ▲가산금 부과 및 ▲강제징수(독촉·압류·추심 등) 가능

## 5. 유의사항

| 보상금 | 산정에   | 활용되는  | 매출액은            | 국세청에   | 과세신고된    | 자료만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
| 인정되 | 며, 개별 | 증빙은 - | 불 <b>인정</b> (확인 | 보상·이의신 | 청 반영 불가) |     |

|  |  | 개업일은 | 국세청 | 사업자등록증에 | 기재된 | 개업연월일을 | 기준으로 | 함 |
|--|--|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|
|--|--|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|

| 대표 | 자 | 본인           | 이 손 | 실보   | 상시스 | :템에시 | 네본 역 | 인인증을  | 할 : | 수 없 | 거나, | 직접  |
|----|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신청 | 불 | · <b>가</b> 하 | 경우  | , 대리 | 비인을 | 통해   | 신청   | 가능(단, | 통합. | 위임장 | 제출  | 필수) |

| 신속·확 | ·인보상으로 | 보상금  | 산정이           | <b>곤란</b> 한 | 경우, | 이의신청 | 시 | 전문 |
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|----|
| 기관을  | 활용하여 주 | l토·산 | · <b>정</b> 예정 | Į           |     |      |   |    |

<sup>\* (</sup>예시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등

## 6. 신청 문의

## □ 전화 문의

-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(☎1533-3300, 평일 09~18시 운영)
- 손실보상 전담창구(별도 파일 첨부, 평일 09~18시 운영)
  - \* 각 시·군·구청 / 지방중소벤처기업청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## □ 온라인 문의

- 손실보상 홈페이지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후 '채팅상담'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(손실보상114.kr) 직접 접속
  - \* 상담원 : 평일 09~18시 상담 / 챗봇 : 24시간 상담 가능

## 업종별 소기업 요건

## □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른 요건

- ① 업력 36개월 이상 ⇨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
- ② 업력 12~36개월 ⇒ 최근 1년 연간매출액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
- ③ 업력 12개월 미만 ⇨ 일 매출액 · 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매출 환산액

#### <소기업 판단 시 연평균매출액 산식>

|   | 개업일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기본법상 연평균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자료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
| 1 | ~′17.12.31.          | ('18년, '19년, '20년 年매출액 합계) ÷ 3                       | ИГН        |
|   | ′18.1.1.~12.31.      | ('19년, '20년 年매출액 합계) ÷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도별<br>매출액 |
| 2 | '19.1.1.~12.31.      | '20년 年매출액  | 메르그        |
|   | ′20.1.1.~9.30.       | '20.10월 ~ '21.9.30. 동안의 매출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3 | ′20.10.1.~ ′21.8.31. | (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~'21.9.30. 동안의 매출액<br>합계) ÷ 개월수 × 12 | 월별 매출액     |
|   | ′21.9.1.~9.30.       | (개업일 ~ 9.30.까지의 매출액 합계) ÷ 일수 × 365                   | 일별 매출액     |

#### < 「중소기업기본법」관련 규정 >

-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(이하 "회계관행"이라 한다)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. 다만,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.
  -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  - 1. 직전 3개 시업연도의 총 시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: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
  - 2.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(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 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: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는 금액
  - 3.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
    - 가.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: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(이하 "산정일"이라 한다)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(逆算)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
    - 나.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: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     - 1) 산정일이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
      - 2) 산정일이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

# □ 업종별 소기업 기준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(표준산업분류)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| 규모 기준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    |          |
| 2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|         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| C14      |         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15      |         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19      |         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| C20      |         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21      |         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| 평균매출액등  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    | 120억원 이하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| C25      | 120기년 에에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| C26      |   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    |         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| C29      |   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30      |   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    |        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| D        |         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    |          |
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 | Α        |          |
| 19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В        |          |
| 20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|         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| C13      |         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| C16      |         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| C17      | ᇳᄀᇜᆂᅅᄃ  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| 평균매출액등  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22      | 80억원 이하 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| C27      |         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|         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|          |
| 29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|         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| Н        |         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| ᆏᄀᄜᅕᅅᄃ  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 |
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| 50억원 이하 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 | E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E36 제외) |          |
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 |
|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М        | 30억원 이하 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| Ν        |         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| R        |         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| C34      |         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 |
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Р        | •       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Q        | 10억원 이하 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| S        |          |

# 손실보상신청서

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# 손실보상신청서

| ※ 색상이 어두 | 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 | 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                 | 니다.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|--|--|--|--|
| 접수번호     |              | 접수일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상호명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 </u>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분류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[]개인사업자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사업장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신청인      |              | 은행명 / 계좌번호(대표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(대표자)    | [] 법인사업자     | 상호명   | 법인명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사업장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은행명 / 계좌번호(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좌주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「소상공연    |              |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3항, 같은 법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 |          | ∥1항 및 같은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년        | 월 일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신청인   |          | (서명 또는 인) |  |  |  |  |
| 중소벤:     | 처기업부장관       | 귀하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  |  |  |
| 첨부서류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수수료<br>없음 |  |  |  | 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]

# 통합위임장

#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

| ① 권한을 위임   | 심하는 자(원대표   | 표자) 정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,  |  |   |
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성명(대표자)  | )   | 업체명   | (법인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주민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  |   | <del>آ</del>  |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사업자등록번   | 호   | 휴대-   | 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위임 사유<br>* 해당하는<br>사유에 "√" 표시 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대표(법인<br>  타인 계좌 수령<br>  가족 대리 신청   | 팅(본인 또는 법인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불가 시)  |  | )   |
| ② 권한을 위임   | 임받는 자 정보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성명   |   | 위임자와의 관계  | ┃ □ 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□ 직원 □   | 기타(  | )   |
| 주민등록번호   |   | 휴대폰번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주소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③ <b>위임내용</b>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 |   | 에 있어, 해당자금  | 구 신청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령에 관점   | 한 모든 급   | 권한을   |
| 위임받는 자에게   | 위임할 것을 등  | 동의합니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1년  | 월  | 일   |
| 위임받는 자에게   |   |   |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  | <b>월</b><br>서명 또는  | _   |
|  |   | 자(원 대표자)  |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  | _  | _   |
|  | <b>위임하는</b><br>-집·이용에 관한 /  | 자(원 대표자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  | _  | -<br>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개인정보의 수  | 위임하는<br>-집·이용에 관한 /<br>선<br>이본인:성명, 업체<br>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(원 대표자) :<br>사항<br>수집항목<br>테명(법인명), 주민등록<br>휴대폰번호, 위임 사유<br>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(법인등<br>2. 계좌번호.                    | 록번호), 주소,<br>통장 사본 등   | -<br>서명 또는<br>보유 및<br>이용기간<br>해당정보자  | (인)<br>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개인정보의 수<br>수집 및 이용 목적<br>소상공인 손실보싱<br>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하는<br>-집·이용에 관한 /<br>성<br>이본인:성명, 업차<br>사업자등록번호,<br>이대리인:성명,                      | 자(원 대표자) :<br>사항<br>수 집 항 목<br>테명(법인명), 주민등록<br>휴대폰번호, 위임 사유<br>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<br>사본 등 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(법인등<br>2, 계좌번호,<br>호, 주소, 우        | 록번호), 주소,<br>통장 사본 등   | 는 서명 또는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정보자 동의일로부터   | (인)<br>(인)<br><u>간</u><br>제공<br>  5년        |
| □ 개인정보의 수<br>수집 및 이용 목적<br>소상공인 손실보싱<br>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하는 -집·이용에 관한 /  | 자(원 대표자) :<br>사항<br>수 집 항 목<br>테명(법인명), 주민등록<br>휴대폰번호, 위임 사유<br>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<br>사본 등 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(법인등<br>2, 계좌번호,<br>호, 주소, 우        | 록번호), 주소,<br>통장 사본 등<br> 임자와의 관계   | -<br>서명 또는<br>보유 및<br>이용기간<br>해당정보자<br>동의일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인)<br>(인)<br>제공<br>15년<br><b>않음)</b>       |
| □ 개인정보의 수<br>수집 및 이용 목적<br>소상공인 손실보싱<br>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하는 -집·이용에 관한 /  -집·이용에 관한 /  - 이본인:성명, 업차 사업자등록번호, 이대리인:성명, 의제작번호, 통장 /  확인하고 동의하 | 자(원 대표자) :<br>사항<br>수 집 항 목<br>테명(법인명), 주민등록<br>휴대폰번호, 위임 사유<br>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<br>사본 등 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(법인등<br>-, 계좌번호,<br>호, 주소, 우        | 록번호), 주소,<br>통장 사본 등<br> 임자와의 관계<br> 등의함 □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서명 또는<br>보유 및<br>이용기간<br>해당정보자<br>동의일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인)<br>(인)<br>제공<br>(5년<br><b>알음)</b>       |
| □ 개인정보의 수 수집 및 이용 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성 관련 업무  ☞ 위 내용을  ※ '소상공인 손' 등)간 발생 기 | 위임하는 -집·이용에 관한 / - 집·이용에 관한 / -   | 자(원 대표자) : 사항 수 집 항 목 테명(법인명), 주민등록 휴대폰번호, 위임 사유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<br>사본 등 사십니까?  터 위임받는 자 더 이해 당사자(공등은 자체적으로 해결 | 번호(법인등<br>수, 계좌번호,<br>호, 주소, 우<br>(미동 | 록번호), 주소,<br>통장 사본 등<br>임임자와의 관계<br><b>5의함 □ 동</b><br><b>2021년</b><br>미성년자, 타역 | -<br>서명 또는<br>보유 및<br>이용기간<br>해당정보자<br>동의일로부터<br><b>월</b><br>서명 또는<br>인 계좌 수 | (인)<br>제공<br>1 5년<br><b>알음)</b><br>일<br>(인) |

## 확인보상신청서

■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서식]

## 확인보상신청서

| 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--|--|
| 접수번호   |          | 접수일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상호명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|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    | 시설분류       |  |  |  |  |
|  | []개인사업자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사업장주소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 신청인  |          | 은행명 / 계좌번호(대표자) | 계좌주        |  |  |  |  |
| (대표자)  | [] 법인사업자 | 상호명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    | 시설분류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| 법인등록번호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사업장주소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은행명 / 계좌번호(법인)  | 계좌주        |  |  |  |  |
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

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보상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**신청인** (서명 또는 인)

## **중소벤처기업부장관** 귀하

| 첨부서류 | 증빙자료 | 수수료 |
|------|------|-----|
| 심구시ㅠ | 증빙자료 | 없음 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]

# 이의신청서

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# 이의신청서

| ※ 색상이 어두     | 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   | 하지 않으며, [          | ]에는 해당되  | 니는 곳에 √표 | 를 합니다. 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|   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상호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이의           | []개인사업자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| !        |          | 사업     | 자 등록번호    |           |
| 신청인<br>(대표자) |                | 상호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법인     | 명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[] 법인사업자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| <b>!</b> |          | 사업     | 자 등록번호    |           |
| 이의신청(다음      | 음중 택일) : [ ] f | 소실보상 대성<br>소실보상금 혼 |          | ] 손실보상   | 금 금액,  | [ ] 손실보상금 | 금 감액·미지급, |
| 상세내용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20           | 21년 3분기 손실트    | 보상 기준 등            | 에 관한 고   | 시에 따라    | 위와 같이  | 이의를 신청합   | 합니다.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년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| 일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신청             | 당인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(서명 또는 인) |
| 중소벤:         | 처기업부장관         | 귀하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수수료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없음       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]